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6. 2. 3.] [경찰청고시 제2026-1호, 2026. 2. 3.,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0950

1. 경비지도사 기본·보수교육기관(6개) 지정

연번	교육기관명	소재지	자격종류
1	(재)서강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27	일반경비지도사
2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중앙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97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3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	경기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317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4	세종홍익아카데미(주)	세종 조치원읍 안터길 89	일반경비지도사
5	신라대학교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일반경비지도사
6	제주관광대학교	제주 제주시 도령로 15	일반경비지도사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

※ 다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비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3.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경비지도사 기본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지도사 보수교육기관은 같은 규칙 별표 1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따른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4. 준수사항

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이 수립하는 민간경비 교육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이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기본지침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이나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 기준에 부합한 교육 시설 및 강사 수준 등을 지속 유지하여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정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의 지침이나 명령에 따른다.

부칙 <제2026-1호, 2026.02.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